

폐수배출시설 설치 [] 허가신청서 []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뒤쪽참조
------	------	------	------

신청 (신고인)	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
	주소	(전화번호:)	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

신청 (신고) 내용	사업종류 (분류번호)	주생산품		
	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	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		
	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			
	폐수배출시설명	제품별 생산능력 (/일)	폐수배출량(m ³ /일)	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
	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()시간/일, ()일/년	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()시간/일, ()일/년		
	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			
측정기기 부착항목				
비점오염원 신고대상	[] 해당(신고서 제출여부 []제출 []미제출) [] 해당없음			
	사업장 부지면적(m ²)	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, 제3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[] 설치허가를 신청 [] 설치를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: 1만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,000원)
------	-------	--

첨부서류	<p>1. 일반 제출서류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</p> <p>가.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</p> <p>나. 원료(용수를 포함합니다)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)</p> <p>다.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(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</p> <p>라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</p> <p>2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</p> <p>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</p> <p>나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</p> <p>다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</p> <p>3.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</p>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p>1.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p> <p>2.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)</p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※ 처리기간: 10일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)

1.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.
2.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, 용수·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,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·부원료·첨가물,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·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(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)을 나타내야 하며,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.
3. 원료(용수를 포함합니다)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가. 원료·부원료·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·평균량을 적되,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용수는 공급원(지하수·하천수 등)별 및 사용목적(공정용수·간접냉각수 등)별 일일 최대량·평균량을 적어야 하고,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다.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, 오염도, 폐수량,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·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4.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, 처리방법, 처리능력, 처리효율, 시설명칭 및 용량,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(재생방법, 이용방법,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)이 포함되어야 하며,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,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(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),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5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,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6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72조제3항,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,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